

소 취 하 서

사 건 2000가단000 손해배상(자)

원 고 000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전부를 취하합니다.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1. ◇◇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2.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7	제출기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민사소: 제266조 제1항)
제출부수	취하서 1부 제출		
기 타	준비기일에서 진술하기 효력을 가짐. 소취하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의한 제출을 불허하는 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37514 판결). ·소의 취하는 원고가 3 원고의 법원에 대한 3 는 달리 내심의 의사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신고서 제출을 지시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고 하여도 이를 무효리 다11740 판결).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데	나 변론을 중 해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후 전 후 후 전 후 전 후	판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용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됨항). 린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은 「소의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 가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는 이불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소취하는지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는 없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지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유무를 판정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당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는 없음(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 요와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 그호임(대법원 1985. 9. 24. 선고 82다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 소장의 보정, 반소